

언론인의 직업의식과 직업윤리

조용중

한국언론연구원 원장

계엄군의 고위 장성이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이런 문답이 있었다. 기자가 군장성의 질문을 받는 드문 자리였다.

(문

장군의 장교는 소정의 교육을 받고 임관되기에 앞서 국가에 충성할 것을 선서한다. 임관 뒤에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진급을 한다. 항상 나라에 충성을 한다는 투철한 사명감을 간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충성심에 의심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행동을 한다. 그러나 언론인에게 자격시험이나 충성서약 같은 것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는데 어떨까?

(답

장군의 말은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말이다. 언론인은 그들의 양심에 따라 뉴스가 된다고 판단하는 것을 보도하고 논평하는 것이 곧 국가에 대한 충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장군은 혹시 펜타곤 페이퍼사건에 대해 들은 일이 있는가? (문
내 질문을 혼동하지 말라. 기자들이 수행하는 직업이 진정으로 나라를 위한 것인지, 개인적인 흥미를 위주로 한 것인지를 말해 달라.

(답

장군과 같은 공인인 경우 개인적인 사항들도 필요에 따라 우리의 취재대상이 될 수 있다. 그건 기자 개인의 흥미에서가 아니라 기자가 대표하는 독이자 모든 시민의 알아야 할 권리라는 뉴스의 수요자에 대한 언론의 권리이자 의무인 것이다.

수많은 기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이 응답은 논전에 가까운 것이었겠지만 더 계속되지 못한 채 끊겼다. 이 대화에서 장군이 하고자 했던 말은 언론인들에게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은 커녕 최소한의 관심도 없고 오직 취재라는 직업의식 밖에 없다는 경원, 또는 멸시에 가까운 인식이 그 바닥에 깔려 있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도저히 맞 물릴 수 없는 상열의 인식 차이였다.

아닌게 아니라 군인의 눈으로는 언론은 때로 충성심 없는 집단에 불과하다고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군과 언론은 항상 극단적인 대립관계에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그런 통념에도 불구하고 군과 언론 사이에는 놀랍게도 상극하고 대립하는 관계보다는 서로 공통되는 점이 더 많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첫째, 두 직업집단이 다

같이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자체의 동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 즉 두 직업은 모두 투철한 직업의식 때문에 상당한 자기희생과 그 팀 구성원들의 직업 정신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군과 언론은 시간적 제약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 제약은 그들의 일을 수행하는 방식까지도 결정하게 된다는 점이다. 셋째는 전문적인 직업주의 때문에 관련 없는 제 3 자에게는 그들의 안 사정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점, 따라서 군이 언론의 내부나 기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듯이 언론 또한 군의 내부사정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Alan Hooper, The Military and the Media).

뉴스는 언론에 의해 제조된다

통념 상 거의 상극의 대립관계에 있는 군대와 언론의 관계를 굳이 설명하면서 본론에 들어가려는 것은 한 직업군인이 가지는 직업의식이 미치는 사회적인 영향을 말하기 위해서이다. 나라를 위한 충성과 엄격한 규율을 생명으로 하는 군대는 조직으로서 행동하는 때에 그 정당성이 인정되겠지만 어느 한 군인의 개별행동까지가 모두 충성이라는 핑계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러나 언론의 경우는 최근에 해석의 범위가 훨씬 넓어진 발행의 자유, 발표의 자유권 때문에 반드시 집단으로서의 행동만이 아니더라도 그 정당성이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언론이 보도하는 뉴스는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만이 아니라 언론에 의해서 제작되고 있는 이른바 의제뉴스까지도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조셉매카시가 화려한 언론의 각광을 받으면서 좌파에 대한 공세를 벌이고 있을 때, 내일 아침 기자회견을 가질 것이라고 예고하면 그것이 뉴스가 되고 예고된 시간에 발표를 기한다고 수정하면 다시 뉴스가 되었다. 재미를 붙인 메카시는 다시 예고된 시간에 조사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사실의 일부」만을 발표하는 의 속임수를 써도 언론은 아무 불평 이 메카시의 말장난에 놀아나야만 했다. 일단 매카시가 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뉴스가 된다고 판단할 언론은 설사 뉴스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해도 도저히 발을 뺄 수가 없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만 것이다. 이런 의제뉴스의 악순환은 수요자가 바라거나 아니거나를 떠나서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뉴스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도록 언론에 의해서 제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요즘처럼 정당의 대표들이 어김없이 하루에도 한번씩 기자 간담회를 갖는 상황 하에서는 설사 뉴스가 아니더라도 정당대표의 말이 뉴스처럼 각색, 분장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뉴스가 범람하는 세태에서 언론인에게 투철한 직업의식이 요청되는 것은 물론이다. 그것은 군인에게 애국심과 충성심, 엄격한 규율의 엄수가 강요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제임스 레스톤은 한때 대영백과사전에 기술된 것을 인용해서 저널리스트를 명확하게 그 특성을 정의할 수 없고 사회적 지위도 특정할 수 없는 「애매한 직업」이었던 때가 있었다고 말한 일이 있다. 오늘 날에 와서는 언론은 때로 헌법이나 실정법의권위를 넘어서는 막강한 제 4 부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이름 없는 개인의 사생활에서 대통령의 자리까지도 위협할 수 있을 만큼 대단해졌다. 그 엄청난 힘을 행사하는 언론인들이

때로 투철한 직업의식이 희박하다는 비난을 듣게 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역설적인 말이지만 그것은 언론인에게 직업의식이 희박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지나치기 때문이라는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다.

언론의 속명적 한계

언론의 속성상 시간을 아끼는 경쟁을 하는 데서 오는 사실확인의 미진 등 불가피한 결과라는 이유가 그 하나이고 뉴스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개인이 아니라 공적 인물이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사생활이나 명예를 건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다른 이유이다. 언론이 정부나 권력기관 등을 상대할 때는 저항과 대결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었다. 적어도 대결하고 있는 상태자체가 언론에게는 명예일 수조차 있었다. 그러나 언론이 어느 개인의 명예를 손상했을 경우는 대결로서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고 언론이 자구의 태세를 갖추어야만 하게 되었다. 개인의 명예의 한계가 어느 선인가는 새롭고도 진부한 언론의 속명적인 한계라 할만하다. 어떤 의미에서는 명예훼손과 사생활침해의 문제는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동시에 미묘하게 상처되는 문제인 것이다. 우선 명예훼손은 어느 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대한 침해이며 보도로 인해 제 3자가 혐오나 경멸의 감정을 갖게 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반대로 사생활침해는 제 3자의 평가, 사회적 평가와는 상관없이 사생활의 공표로 인해 본인이 정신적, 감정적인 고통을 받았다면 권리침해라고 보아진다는 차이가 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호의적인 기사로 인해 제 3자가 친밀감을 갖게 되었다. 해도 사생활침해라는 결과는 그대로 남게 되는 것이다. 또 다른 차이점은 명예훼손은 공표된 사실이 진실인 경우 책임을 면한다는 면책사유가 있으나 사생활침해는 사실여부에 상관없이 사생활의 공개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요컨대 사생활의 권리는 비교적 젊을 뿐 아니라 추상적인 관념으로는 그 범위를 특정하기가 극히 어려운 개념이다.

더구나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서 제기되는 사생활침해문제는 보도되는 인물이 공인이나 사인이냐 에서부터 논란의 쟁점이 될 수 있다. 공인에게는 사생활이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은 법 해석상의 관행일 뿐, 그 한계를 어떻게 가리느냐는 것은 계속해서 문제로 남게 된다. 법률 이전의 문제로 언론이 스스로 그 한계를 정할 필요성이 그래서 제기되는 것이다. 아울러 그러한 사생활을 취재하는 언론이 과연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만한 방법을 썼는가 하는 윤리적인 문제도 제기되어야 한다. 87년 5월, 미국 민주당 대통령후보로 나섰던 게리 하트의 여성편력을 취재하면서 마이애미 헤럴드는 하트의 집밖에 밤새도록 차를 세워 두고 숨어서 취재를 했다. 비록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런 취재 방법에 대해 언론 내부에서는 호된 비난이 일어났다. 열쇠구멍을 통해 남의 집 안방을 들여다 본 꼴(Keyhole Journalism

이라는 비난, 「당신이 그런 비신사적인 취재를 한다는 걸 알면 어느 이웃이 당신을 신사로 상대해 주겠느냐」, 「남의 사생활을 쫓느라고 밤을 새운 것을 당신의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변명 하겠는가」는 등등. 물론 이런 비난에 못지않게 하트의 사생활보도가

대통령후보경선자라는 공인이 겪어야 할 마땅한 대가라는 주장이 맞서 있었다. 어느 쪽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이미 하트의 사생활이 공개되고 침해된 것은 엄연한 현실이었다. 언론은 그 직업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내세워 그 정당성을 주장했고 피해자나 그 동성자들은 언론의 무절제와 비신사적이고 비윤리적인 측면을 들어 반론 하지만 도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시비의 판정을 내리기는 어렵다. 그만큼 이 문제의 어려움, 양면성을 실감하게 된다.

언론인의 투철한 직업의식이 어떤 사서적 기능이나 법률적 보장, 제약에 우선되어야

이 점 언론의 직업의식과 명예훼손 또는 사회생활침해의 미묘한 관계를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교통경찰이 위반차량을 단속하느라고 러시아워의 차량통행을 막는 결과를 빚었을 때 그 경찰의 행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어느 의미에서 교통경찰은 직무를 역수행 했다고 밖에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언론의 보도 또한 진실을 전달했다는 정기능의 면이 있는 반면에 그것으로 인해 사생활을 침해했거나 명예를 훼손했다면 언론의 역기능이라 할 것이다. 그 판정을 누가 내릴 것인가, 궁극적으로는 법률에 맡겨지겠지만 법률이전의 단계에서 언론 스스로가 그 사회적 기능을 고려해서 양식에 따라 판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칫 이 문제가 법률적인 쟁점이 될 경우 언론의 자유라는 본질문제가 쟁점이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단순도식화해서 옳고 그름의 판정을 내리기란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언론이 그 사회적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언론활동-취재와 보도-의 자유라는 민주사회의 대전제가 보장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도 다른 사회적 기능과 충돌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스스로 자재와 견제가 필요한 것이다. 뿐 아니라 언론자유 본질인 발행의 자유가 곧 보도로 인한 과오에 대한 일률적 면책을 뜻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언론의 자유가 거의 무제한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미국에서조차 이론상으로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실정법이 무수하게 제정되어 있다. 다만 그 운영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에 비중을 두고 있을 뿐인 것이다. 특히 명예훼손이나 사생활보호의 권리의식은 언론의 자유라는 측면에서만 볼 때 적지 않은 위협이기까지 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 미국 신문발행인협회의 아서 솔즈버거(뉴욕 타임스 발행인)는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이 소송에 걸릴 때 드는 비용이 언론경영에 대한 위협이며 이 위협을 줄이는 길은 「언론이 모험스러운 보도를 줄이는」 길밖에는 없다고 말한 일이 있다(Presstime, 88.8)

. 또 경찰의 기록을 근거로 폭행 당한 여성의 신원을 밝힌 기사 때문에 10만 달러 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플로리다 주의 조그만 주간지 발행인은 「배상금을 지불하고 나면 내 신문은 문을 받아야 한다.」고 비명을 울리고 있다. 이런 명예훼손 사건의 청구액이 연간 약 100만 달러는 웃돌 것이라는 것이 미국법계의 추산이다. 앞서서도 말한 대로 이것은 언론이 대결할 상황이 아니라 자구책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실행해야 될 상황인 것이다.

이와 같은 예들은 언론의 자유라는 사회적 기능을 우선적으로 내세워 그 보도로 인한 피해까지도 면책하는 것을 미덕처럼 여겨 온 한국의 언론풍토에 커다란 경종이 아닐 수 없다. 한국사회도 최근 인권의식의 고장, 언론보도에 대한 반론권의식의 고장 등이 법률적 소송의 가능성을 충분히 예고하고 있다. 그런 것을 언론자유에 대한 도전이나 장애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언론은 마땅히 자구책과 대항수단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솔즈버거의 말대로 모험을 줄이는 보도가 어떤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될 때이다. 그러나 특히 한국의 언론은 그 속성상 법률수단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사회적인 통념, 관행에 의해서 또는 흥론에 호소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자칫 지상재판-여론재판이라는 비판을 면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 더구나 여론재판이 권력 등 강자와 대결하는 것이 아니고 약자-개인을 상대하는 경우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하는 언론의 본래 기능에 역행하는 결과가 되고 마는 함정이 있다. 그런 점에서 언론인의 투철한 직업의식이 어떤 사회적 기능이나 법률적인 보장 또는 제약에 앞서 강조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다. 언론인의 직업의식이 무엇인가, 과연 언론도 의사나 사제처럼 사회적으로 공인된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전문직이라고 할 경우 당연히 그것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업상의 규율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언론이 지나치게 사회적 통념 또는 자기편의적인 규율만을 고집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등의 비판이 언론을 향해서 제기되고 있다.

언론을 전문직으로 볼 수 있는가

언론을 전문직으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소수나마 이론이 없지 않다. 88년에 AP 회원사 체육담당편집자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90%의 응답자가 언론, 특히 스포츠기자는 전문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조사결과가 있다(Editor and Publisher, 89. 114)

비단 스포츠기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의 언론인도 비슷하지만, 유수한 미국의 언론학자인 존메릴 같은 이는 아직도 언론인의 전문직주장에 이론을 제기하고 있다. 그는 언론인이 되기 위한 시험제도가 없고 따라서 자격증이 주어지지 않고 있으며 종사자들이 윤리규범의 준수를 서약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그들 자신은 다만 언론인이라고 보아야지 전문적인 언론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메릴은 말하고 있다. 언론인에게 자격증이 필요한가, 그러기 위해서 일정한 자격시험이 필요한가의 문제는 본질적인 언론의 자유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글이 다룰 것이 못 된다. 다만 메릴이 제기한 윤리규범의 준수에 대해서는 언론도 스스로 그 필요를 인정해서 제정하고 있기는 하다.

한국도 이미 1950 년대에 신문윤리강령을, 1961년에는 그 실천요강을 제정해서 모든 언론이 준수할 것을 다짐해왔다. 최근에 한겨레신문이 독자적인 윤리강령을 제정했고 방송사도 독자적인 제정을 서둘고 있다. 이들 윤리규범들은 표현의 차이는 있으나 다같이 개인의 명예를 존중해야 하며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는 한, 적어도 언론이 추구하는 이상으로는 사생활의 침해나 명예훼손을 철저히 배척하고 있는 의지는 읽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언론이 그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불가피한 부작용이라는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변명이 언제까지고 통할 수는 없도록 수요자의 권리의식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가까운 예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작년 중 실적을 들 수 있다. 모두 55건의 중재처리건수 중 절반이 넘는 36건이 명예훼손과 사생활침해를 호소하는 내용이었다. 문제된 기사를 보면 거의가 부주의에 의한 것이며 조금만 조심을 해서 윤리강령이나 요강을 읽었으면 저촉이 안 되었을 것들이었다. 언론이 무책임한 타성에 젖어 있음을 웅변으로 말하는 사례들이다.

공익을 위한 언론의 사서적 기능이 항상 우선할 것인가

이처럼 언론이 명예훼손과 사생활침해를 일상적으로 저지르고 있다고 한 마디로 나무라기는 아주 쉬운 일이다. 문제는 그 다음에 언론과 사회가 이 현상을 어떻게 진단하고 처방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그 사회의 슬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언론의 이 같은 소행을 다만 언론의 부주의나 잘못으로만 볼 것인가이다. 궁극적으로는 그 잘못이 전적으로 언론에 있음은 피할 길 없는 결론이지만 그러나 언론은 항상 그 시대와 사회를 반영하는 산물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언론과 사회는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혜를 모아야 될 것이다. 또 언론이 수행하는 사회적 기능이 이런 문제점으로 말미암아 위축되거나 저항을 받는다면 오히려 더 큰 본질문제로 발전하게 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이 시대, 이 사회에서 통용되는 모든 인식의 평균치를 떠나서 언론만이 윤리강령의 문구에 집착해서 소극적인 보도태도를 취할 때에 언론에 주어진 사회적 기능을 다했다고 볼 수는 없다.

1년 반 이상을 끌면서 예상 못했던 정치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일본의 리루르트 스캔들 보도가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처음에 이 사건은 법률적으로는 일단락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을 지방의 초년기자들이 미심한 점을 끈질기게 쫓아서 전대미문의 스캔들로 발전시켜버린 것이다. 윤리강령에서 말하는 대로 혐의자에게 무죄의 추정을 갖고 덤빈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된 혐의자들에게까지 일단 유죄일 것이라는 추정을 가지고 파헤쳐 들어가 마침내는 유죄라는 추정을 성립시킨 것이다. 사직당국의 수사결과를 언론이 뒤따라가며 보도하는 종래의 패턴을 뒤집어서 언론의 취재결과를 사직당국이 수사하는 꼴이 되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정치인과 혐의자들이 명예훼손과 사생활침해를 호소했으나 보다 큰 공익을 내세우는 언론의 사회적 기능 앞에 묻히고 말았다. 공익을 위한 언론의 사회적 기능이 항상 우선할 것인가, 어느 경우에 개인의 명향이나 사생활이 우선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여전히 언론의 현안문제로 남는다. 언론이 기능하고 있는 그 시대, 그 사회의 다른 기능들과 어떻게 조절을 이루고 상관관계를 가지느냐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복잡한 러시아워에 위반차량을 단속하는 경찰이 상황에 따라 업무수행의 지혜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듯이 언론도 그 기능을 수행하는 지혜와 재량이 스스로 한계 지워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언론의 책임감과 윤리의식이 요청되는 것이 바로 그

때문이다. 공익을 위한 보도라는 명분으로 개인이 누려야 될 사적인 법익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는 언론의 슬기가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조화하고자 하는 노력은 지금보다 훨씬 강한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거듭되어 마땅하다.

미국 콜롬비아대 수학

동아일보 정경부차장, 경향신문편집국장, 중앙일보 논설위원. MBC·경향신문 전무이사.

현재 한국언론연구원장